

심리상담비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청구구분	[] 공상공무원 본인 청구 [] 본인의 청구([] 상속인 []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		
	①우편물수령주소 ※ 도로명(새길)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휴대전화	자택전화	
		e-mail _____@_____		
청구인정보	②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본인외청구	※ 공상공무원 본인과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청구가 어려운 중증 공상공무원 대신 보호자가 청구하거나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청구를 대행하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공상공무원과의 관계	공상공무원의 ()	
③공상공무원 성명	④공상공무원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청구내용	심리상담기관	심리상담기간	청구액 (원/회)
		_____ ~ _____	
		_____ ~ _____	
		_____ ~ _____	
합 계			

제 3 자 가 해	[] 가해자 있음 [] 가해자 없음 [] 가해자 불명		
	가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주소	연락처
		보험회사명	담당자연락처
	합의부여	[] 합의 ([] 보험 [] 일반 [] 공탁)	
[] 미합의		소송부여 [] 예 [] 아니오	사건번호
			관할법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및 의료법의 기록 열람 등의 동의 *필수사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지

· 공단은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8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고지

· 공단은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이용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4의2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에 필요한 본인 진료기록 등의 사본 발급을 동의하고 일체 권한을 위임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공통서류	1. 비용납부 영수증 2. 심리상담 출석확인 3. 심리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심리상담비 최초 청구시 또는 심리상담기관 및 상담사 변경시에만 제출) 4. 상담사 자격증 사본 (*심리상담비 최초 청구시 또는 심리상담기관 및 상담사 변경시에만 제출)
추가서류	합의금 기재된 합의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한 경우)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승인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 시작일로 봅니다. ·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최대 10회까지 회당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가능합니다. · 제3자(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의금액 범위 내에서 심리상담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작성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구분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 - 법정대리인 : 본인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받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 ex) 친권자, 후견인 2)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 ex)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3)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 ex)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2. ①란의 주소는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3. ②란은 청구인 실명 예금통장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기재하십시오. 4. ③, ④란은 공상공무원 본인과 청구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작성하며, 공상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십시오. 5. ⑤란은 제3자 가해자가 있는 경우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가해자가 있을 경우 가해자정보(성명, 주민번호(13자리),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없는 경우는 “가해자 없음” 에 체크하십시오.)

청구서 보낼 곳(우편)		
부서명	우편번호	주소
재해보상실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8층 재해보상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 서식 안내

- 공단 홈페이지 접속(www.geps.or.kr) → 사업안내 → 재해보상
- 공단 홈페이지 접속(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

인터넷 청구 안내

- 공단 홈페이지 접속(www.geps.or.kr) → 종합재해보상포털 → 재할급여 → 심리상담비 청구 클릭 → 청구서 작성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1588-4321)